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콘텐츠제작 관련 계약 체결 원칙 등 규정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75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콘텐츠제작 관련 계약 체결 원칙 등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2
※ [참고] 유사 입법례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3. 11.

다.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드라마·예능 등 영상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형화·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 주체와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외주·하도급 구조의 다단계화, 스태프·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 정산 기준의 불투명,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조건의 사후 변경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의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콘텐츠제작 관련 계약 체결 원칙 등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개정안은 ①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며, ② 계약 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는 한편, ③ 이 법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의2(콘텐츠제작 관련 계약) ①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5. 수익의 배분과 그 내역 및 기한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콘텐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25조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1)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제20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드라마·예능 등 영상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형화·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 주체와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외주·하도급 구조의 다단계화, 스태프·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 정산 기준의 불투명,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조건의 사후 변경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①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며, ② 계약의 당사자는 ②⁻¹계약 금액, ②⁻²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②⁻³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②⁻⁴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②⁻⁵수익의 배분과 그 내역 및 기한에 관한 사항, ②⁻⁶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뒤 그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③ 현행법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 현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여 창작자와 스태프의 정당한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투명하고 대등한 계약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제작 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제20833호)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예술인 복지법 (제20915호)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